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흡사랑이라 칭한다.

제2조(인 원) 본회의 회원 수는 30명으로 제한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창작활동, 대외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전시, 체험학습, 견학)
2. 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일신원, 아산시이주여성연대)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자격 및 가입) 본회의 회원은 아산여성회관에서 3기(1년)이상 도예 수업을 이수한 자로서 가입 시, 제적회원의 2/3이상 출석, 무기명 투표로 2/3이상 승인을 받아 본회에 가입한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① 정관 및 제규정 준수
- ②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 ③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 납부
- ④ 총회참석(불참 시에는 해당일 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⑤ 제명한 회원과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 ⑥ 회원은 전시, 체험, 견학을 해야하고, 견학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를 자명한 회원

2. 정기모임 3회 이상 불참석, 또는 정회비 3회 이상 미납 시, 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퇴한 경우, 재가입시 연회비X2를 일시납하며, 당회 회비는 면제한다.

제9조(휴회원) ① 휴회는 1년으로 하되, 정기모임 3회 이상 불참석, 또는 정회비 3회 이상 미납 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 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자동 이사회원이 된다.

- ① 상임고문
- ② 지도강사
- ③ 회장 1명
- ④ 총무 1명
- ⑤ 부총무 1명
- ⑦ 재무 1명
- ⑥ 감사 1명

제11조(상임고문) ① 본회에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원중 선출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12조(임원선출) ① 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② 총무, 부총무는 당해연도 선출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추대한다.

③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13조(임 기) ① 임원의 임기는2년, 단임으로 한다. 단 지도강사의 임기는 정하지 않는다.

②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지도강사)

제15조(회 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총 무) 회계운영, 기획, 사업, 재정, 정책, 교육, 홍보 구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제17조(부총무) 회계운영, 기획, 사업, 재정, 정책, 교육, 홍보 구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제18조(감 사)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전직회장으로 년1회 이상 감사한다.

제4장 총 회 및 정기모임

제19조(구성)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흙사랑 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모임은 두 달에 한 번, 해당 월 셋째 주 금요일 12시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총회는 년 1회로 12월에 가지며, 재정보고 및 결산, 회원임명, 회칙개정 등 주요안건을 결정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금의 차입 등에 관한 사항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2/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2/3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불참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5장 이 사 회

제2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고문, 지도강사, 회장, 총무, 부총무, 감사)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일 소집이 가능하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는 회장이 진행한다

제26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의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를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⑥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 원

- 제27조(회비) 1.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 정기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정기회비는 40,000원으로 한다.
 4. 본 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통장으로 관리한다.
 5. 총무는 모든 집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회비를 면제, 부총무는 생활관 회비를 면제한다.
 6.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일시납으로 하며, 가입한 첫 달의 회비를 면제한다.

제28조(지출) 본 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29조(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 전 해년 12월 1일부터 당해년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7장 경조사

- 제30조(경조사의 범위)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시부모, 친부모)일 경우에 한 지급한다.
 2. 직계존속의 경조사 : 금 100,000원
 3. 본인 질병 시(입원, 수술) 금 100,000원, 경사(개업, 전시회 등) 금 100,000원으로 제한한다.

제8장 부칙

1. 신입회원의 영입은 수시로 하되, 1년 1회 정기전시회 시 모집공고 게시를 한다.
2. 기획전, 특별전이 있을 경우, 회원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를 통해 특별회비를 건을 수 있다.
3. 전시회 시, 분과별 업무를 분담하는 준비위원을 회원의 추대로 2~3명 선출할 수 있다.
4. 신입회원을 흡사량 양식에 따라 가입원서를 작성한다. 원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인적사항
 - ②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전시, 체험, 견학) 해야한다
 - ③ 아산여성회관에서 3기(1년)이상 도예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 ④ 흡사량이 진행되는 봉사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 ⑤ 입회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출석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 ⑥ 회원들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 ⑦ 신입회원은 만 5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한다.